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2. 9. 15 선고 2022가단239202 판결 [계약금 반환 청구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에이스

담당변호사 박민성

피 고 주식회사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9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3,000,000원 및 그 중 30,000,000원에 대하여 2021. 7. 1.부터 2022. 6. 9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이균부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들의 관계

원고는 전기시공공사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, 2020. 10. 19. 피고와 제주 서귀포 C 시설의 전기시공 공사의 수주 중개 업무와 관련하여 컨설팅계약(이하 '이 사건 컨설팅계약'이라 한다.)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30,000,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피고에 대해서 계약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이고,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금을 지급받았으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자입니다.

2.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

가. 원고는 제주 서귀포에 C시설을 건설하는 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, 2020. 10. 19. 피고와 피고가 위 C시설의 전기시공 공사를 원고가 할 수 있도록 수주를 중개하는 컨설팅업무를 위임하고, 그 대가로 원고가 계약시 계약금으로 금 30,000,000원(부가세 별도)을 지급하고, 원고가 수주 계약을 할 경우 수주시 전체 공사금액의 3~5%를 컨설팅비용(계약금 포함)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, 위 계약금과 관련하여는 2021. 6. 30.까지 원고가 위 컨설팅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.

나.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를 상대로 2020. 10. 19.자로

‘제주 C시설 전기공사 시공컨설팅’ 항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2020. 10. 20. 피고에게 금 33,000,000원(부가세 포함)을 지급하였습니다.

다. 그러나 그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2021. 6. 30.까지 위 전기공사의 수주 중개를 하지 못하였고,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,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, 원고가 2022. 2. 8. 피고에게 컨설팅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도 하였으나,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입니다.

3.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의무에 대하여

가.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컨설팅계약에 따라 계약금 33,000,000원(부가세 포함)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피고는 이 사건 컨설팅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특약사항으로 작성한 계약금 반환 약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21. 6. 30.까지 원고의 업무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.

나.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컨설팅 계약서 제8조 제2항과 계약금 반환 약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33,000,000원(부가세포함)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,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하고 있지 아니합니다.

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금 33,000,000원과 위 금원에 대

해서 위 금원 중 계약금 원금 30,000,000원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최종 기일인 2021. 6. 30. 다음 날인 2021. 7. 1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송달될 때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%의 비율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레법이 정하는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

4. 결 론

따라서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,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